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62
------	------

2017. 8. 30.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1일, 조규영의원(찬성의원 11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8. 30)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조규영 의원)

-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하는 동의안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각종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정해 민간위탁 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1)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2)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1)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서울시(이하 “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350개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2017년 예산을 기준으로 약 6,400억원에 이르고 있음<sup>3)</sup>.
- 민간위탁은 당초 공공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과성과 재정보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상당수 민간위탁 사업이 재정보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일부의 경우 사업비 부당집행 등의 역기능 발생하기도 함.
- 최근에는 민간위탁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위탁사업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면서, 사업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각종 노하우가 시로 귀속되지 못하거나 위탁자 우위의 구조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 수행과정

---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2017년 5월말 기준

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이고,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정산, 효과성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요구됨.

- 시의회는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 신설과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 필수 포함 사항의 신설(안 제4조의4 신설)

- 2012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시는 각종 사무의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경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지난 7월 개정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7년이 경과한 재위탁·재계약 사무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였음.
- 다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 한 지 5년이 경과했음에도 동의안 제출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어 시가 관

례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을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안 제4조의4는 이러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9가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민간위탁 동의 절차의 내실화와 동의안 심사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시장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민간위탁 사무명과 추진근거·필요성, 위탁 사무의 내용, 위탁시설의 개요, 위탁기간과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현재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통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양식을 정하고 있으나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시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관리지침에도 동의안 제출서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정하지 않았음.
- 개정안과 같이 동의안 제출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경우 동의안의 서식이 상당부분 동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의회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담겨있어 동의안 심사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더욱이 안 제4조의4제8호에 정의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관련 사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동의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개정안 신설로 인해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현재 시가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개정안의 사항들이 이미 대부분 담겨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행·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무엇보다 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가 행정업무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나 간섭으로 여기기 보다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위한 필수적·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에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임.
-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양식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규칙의 개정을 통해 개정안을 반영한 새로운 별지서식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위탁사무명</u></li> <li><u>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u></li> <li><u>3. 위탁사무</u></li> <li><u>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u></li> <li><u>5. 민간위탁기간</u></li> <li><u>6. 수탁자 선정방식</u></li> <li><u>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u></li> <li><u>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u></li> <li><u>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u></li> </ol>